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2. 3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1. 15
- 나. 제안자 : 노경수 의원 외 9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. 15
- 라. 상정일자 : 2010. 2. 1(제18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노경수 의원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천대교가 2009. 10. 23 개통되었으나 통행료 지원조례가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, 영종·용유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 시기를 단축하여 지역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3월 1일로 단축함.(안 부칙제4354호 제1항)
- 한시적인 부칙 조항 정비(안 부칙제3998-1호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본 조례는 2009년도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준하여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2009.11.9 개정되었으며 부칙제 1항에 본 조례의 시행을 시스템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2010년 4월1일부터 하도록 단서 규정을 둬.
- 본 개정안은 당초 예상하였던 통행료 감면카드의 작성과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간의 호환 시스템이 금년 2월중에 완료예정에 있어 조례의 시행시기를 3월1일로 한달간 단축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강문기 의원

-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기를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나 2월중에 호환시스템이 완료되어 3월 1일부터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는지?

< 답 변 >

○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
- 3월 1일부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 지원이 가능함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고자 함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문희출, 강문기, 허식, 노경수, 박승희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8명)

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3998-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10년 3월 31일”을 “2013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435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“2010년 4월 1일”을 “2010년 3월 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제3998-1호)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2010년 3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제4354호)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10년 4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제3998-1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2013년 3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제4354호)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10년 3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